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교 육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00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, 심사위원의 임명·위촉 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

이에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와 심사위원 임명·위촉 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여 대학의 교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아울러, 대학 교원 임용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항목 추가(안 제4조의3 제3항)

- 대학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단계의 심사 항목에 채용후보자의 학력·경력사항과 제출서류와의 일치여부를 추가함

나.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신설(안 제4조의4)

-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,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, 그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

다.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 등 신설(안 제4조의5)

- 친족관계,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, 근무경험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을 마련하고,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의무화하고,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1조의3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1조의3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전공과”를 “학력·경력사항과 제출서류와의 일치여부, 전공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.

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4(심사위원) ①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 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.

② 전항의 채용심사 시에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,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원이 아닌 자로 한다.

제4조의5(심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제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.

1. 채용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
 2.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
 3.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④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하며,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3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	제4조의3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
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	① ----- ----- 법 제11조의3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	③법 제11조의3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기초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	1. ----- 학

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
일치여부등의 심사

2.·3. (생 략)

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
사위원회는 모집대상 전공분야와
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
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
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채
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
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
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
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
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
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
다.

⑤·⑥ (생 략)

<신 설>

력·경력사항과 제출서류와의
일치여부, 전공과 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·⑤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
같음)

제4조의4(심사위원) ①제4조의3
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
심사위원회는 모집 대상 전공분야
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
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
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심사

<신 설>

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.

② 전항의 채용심사 시에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,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원이 아닌 자로 한다.

제4조의5(심사위원의 제척·기

피·회피) ① 제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.

1. 채용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
2.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
3.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에

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④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하며,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(대학교원지원팀)	
연 락 처	(044) 203 - 6927